

는特許料納付期間이經過한後六月을限하여特許料를追納할수있다
 ②前項의境遇에는第六十八條의規定에依하여定하여진特許料의二倍에相當한金額을納付하여야한다
 ③第一項의規定에依한追納期間內에特許料를追納하지아니한때에는特許料를納付할期間이經過한때에遡及하여特許權이消滅된것으로본다

第四章 審 査

第七十二條 (審査主義) 特許의出願이있을때에는審査官으로하여금이를審査하게한다

第七十三條 (審査官의除外) 第九十九條의規定은審査官의審査關與除外에도이를準用한다

第七十四條 (拒絕豫告및査定) 審査官은特許出願이拒絕할理由있다고認定할때에는出願人에對하여拒絕理由를明示하고期間을指定하여意見書提出의機會를주어야한다

第七十五條 (出願公告) ①審査官은特許出願을拒絕할理由없을때에는出願公告를發할것을決定하여야한다

②前項의規定에依한決定이있을때에는特許局은出願年月日,發明者姓名,出願人姓名,名稱,住所및出願의要旨를特許公告에掲載하여出願公告를하여야한다

③出願公告가있을때에는그出願한發

明은出願公告가있을날로부터特許權의效力이發生한것으로推定한다
 ④特許局은出願公告와同時에出願書類및그附屬物을特許局의定하는場所에서公衆의閱覽에供하여야한다
 ⑤特許局은出願人의請求에依하여出願公告決定이있을날로부터六月을超過하지아니하는期間에限하여出願公告를猶豫할수있다
 ⑥國防上秘密을要하는出願에對하여는出願公告決定을하지아니하고査定을하여야한다

第七十六條 (特許異議申請) ①出願公告가있을때에는누구든지出願公告日로부터二月以內에特許局에特許異議申請을할수있다

②特許異議申請은特許異議申請書를提出하고그理由를記載하여야한다
 ③利害關係人은特許異議決定이있을때까지그特許異議에參加할수있다
 ④特許異議에關하여는審判參加에關한規定을準用한다

第七十七條 (異議申請의追加等)

①異議申請의理由를訂正 또는追加하고자하는者는늦어도異議申請期間經過後本法 또는本法에依한命令의定한期間內에하여야한다
 ②證據方法의追加提出期間도前項과같다

第七十八條 (異議申請에對한決定)

①特許異議申請이있을때에는審査官은特許異議申請書副本을出願人에게送付하고期間을指定하여이에對한答辯書의提出機會를주어야한다
 ②審査官은前條第一項에規定한特許異議申請期間및前項의期間經過後特許異議에對하여決定을하고그出願에對하여特許與否의査定을하여야한다
 ③特許異議決定에는理由를붙이어야한다
 ④特許異議決定에對하여는不服을申請하지못한다

⑤審査官은特許異議申請의結果必要가있을때에는特許發明明細書 또는圖面의訂正을命할수있다

第七十九條 (職權에依한拒絕査定에對한異議申請) ①審査官이出願公告後職權에依하여發見한理由로拒絕하는境遇에는異議申請이있어도그異議申請理由및證據에對하여는審査및決定을하지아니하고異議申請人에게拒絕査定謄本을送付하여야한다
 ②出願人이前項의拒絕査定에對하여不服이있을때에는前項의異議申請도抗告審判에서併合審判한다

第八十條 (準用規定) 特許異議에關한證據調査의費用에關하여는審判에關한費用의規定을準用한다

第八十一條 (異議申請의競合) ①審査官은二以上の異議申請이있는境遇

에는그審査나決定을併合 또는分離할수있다

②一異議申請의理由에對하여審査한結果申請理由가成立될때에는다른申請理由및證據에對하여는審査決定을하지아니한다
 ③前項의審査를要하지아니하는異議申請人에對하여는拒絕査定謄本을送付하여야한다

第八十二條 (特許査定) 特許異議申請이없을때에는審査官은査定을하여야한다

第八十三條 (假保護의遡及의消滅) 出願公告後出願의拋棄,取下나無效處分이있을때,拒絕査定이나審決이確定된때 또는第六十二條第一項但書의境遇를除外하고特許가無效로된때에는第七十五條第三項에依한效力은처음부터發生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第八十四條 (出願公告의特例) 第十一條및第十二條의規定에依한正當權利者의出願이있을때에는審査官은이미出願公告한것에對하여는다시出願公告를하지아니하고査定을하여야한다

第八十五條 (準用規定) 第八條 및 第四十條第一項의規定은審査에關하여이를準用한다

第八十六條 (査定理由의表示) 査定에는理由를붙이어야한다

第八十七條 (委任規定) 本法에規定

許可審判을請求할수있다

一 特許請求範圍의 減縮

二、誤記의 訂正

三、不明瞭한記載의 釋明

②特許權者는 錯誤로因하여 二以上の發明을 一特許出願으로한것을疏明한境遇에各發明마다各個의特許權을附與하는許可審判을請求할수있다

③第一項第一號의境遇에는그發部가前項의境遇에는그各發明이特許出願當時에獨立하여新規의發明인것이아한다이境遇에明細書、圖面의訂正 또는分割許可審決이確定된境遇에는 처음부터訂正된明細書 또는圖面에依하여그發明이特許된것으로본다

第五十七條 (特許請求範圍의變更禁止) 前條의境遇에있어서는特許請求의範圍를擴張 또는變更하지못한다

第五十八條 (特許證의訂正) ①特許局의過失로因한特許의錯誤가特許局의記錄其他書類에依하여判明되었을때에는特許局長은職權으로써特許에影響을미치지아니하는限度內에서이를訂正하고特許證에添附할訂正證書 또는新特許證을交付하여야한다

②訂正한特許證은訂正한形式으로서 처음부터交付한것과같은效力을 가진다

第五十九條 (特許權者以外的者의保護) 特許權者는專用實施權者、質權

者 또는第十五條第二項、第五十一條의規定에依한實施權者의承諾없이特許權을拋棄하거나第五十六條의規定에依한許可審判請求를하지못한다

第六十條 (物上代位) ①質權은本法에依한補償金 또는特許發明實施에對하여 받은金錢이나物件에對하여도이를實行할수있다 但支給 또는引渡前에이를留押하여야한다

②質權設定以前에特許權者가特許發明을實施하고있는境遇에그特許權이競落되더라도特許權者는그特許發明에對하여實施權을 가진다 但相當한補償金を支給하여야한다

第六十一條 (特許의無效事由) ①特許가다음各號의一에該當하는境遇에는審判에依하여이를無效로하여야한다 一、特許가第二條、第四條、第五條、第三十五條의規定에違反하여許與된때

二、特許를받은權利를承繼할수없는者 또는特許를받은權利를冒認한者에對하여特許가許與된때

三、特許發明明細書 또는圖面に그實施에必要한事項을記載하지아니하였거나不必要한事項을記載하여그實施을不能 또는困難하게한때

四、特許가第三十六條의規定에依한條約 또는이에準하는것에違反되어許與된境遇에그違反이前三號의境

遇에準한때

五、特許가條約 또는이에準하는것에依하여第三十五條의規定에違反된때

第六十二條 (無效取消의效力) ①特許가無效로되었을때에는特許權은 처음부터存在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②第五十六條의許可가無效로된때에는 처음부터許可가없는것으로본다

③特許의取消 또는第四十五條의規定에依한實施權의取消가있는때에는特許權 또는實施權은그때부터效力이없는것으로한다

第六十三條 (特許權의消滅) 特許權은相續人이없을때에는消滅한다

第三章 登錄、特許證、公報 및 明細書、特許標識와 特許料

第六十四條 (特許原簿) ①特許局에特許原簿를備置하여特許權、專用實施權 및 實施權 또는이를目的으로하는質權의設定、保存、移轉、變更、消滅處分の制限其他法令에定한事項을登錄한다

第六十五條 (特許證의發給) 特許의査定 또는審決이確定되었을때에는이를特許原簿에登錄하고特許證을發給한다 第五十六條의許可審決이確定되었을때에도 또한 같다

第六十六條 (特許公報의發刊) 特許局은特許公報 및 特許發明明細書를發行하여本법에規定한事項其他特許發明에關하여必要한事項을이에記載하여야한다

第六十七條 (特許標識) ①特許된物件에는特許標識를하여야한다 物件에特許標識를할수없을때에는그物件의容器나包裝에이를하여야한다

②特許權者는專用實施權者、實施權者 또는第四十條第一號의實施者에對하여特許標識를할것을要求할수있다

③前二項의規定은特許된物件의要部를分離하여販賣 또는擴布하는境遇에도이를準用한다

第六十八條 (特許登錄料金) 特許權의登錄을받은者는閣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特許料를納付하여야한다

第六十九條 (特許料의代納) 利害關係人은特許料를代納할수있다

第七十條 (既納特許料의不返還) 既納한特許料는이를返還하지아니한다

第七十一條 (特許料의追納) ①特許權

二〇二六一二一〇

利害關係人の請求에依하여職權으로
서그實施權을取消할수있다

③特許權者 또는請求人은第一項의規
定에依한實施權의許與나前項의規定
에依한特許取消의處分 또는前二項의
請求의却下에對하여不服이 있을때에
는그決定을받은날로부터四十日以內
에法院에訴訟을提起할수있다

④第一項의規定에依하여實施權을許
與하는境遇에는特許局長은補償金에
對하여도이를決定하여야한다

第四十六條 (特許權의存續期間)

①特許權의存續期間은出願公告가있
은境遇에는그公告日로부터出願公告
가없는境遇에는特許日로부터十二年
으로終了한다 但特許出願日로부터
十五年을超過하지못한다

②第十一條의規定에依하여正當한權
利者에게特許를許與하는境遇에特許
를받을수없게된特許出願에對하여는
前項의規定에依한十二年의期間은그
出願公告日의翌日로부터起算한다

③第十二條의規定에依하여正當權利
者에게特許가許與된境遇에는第一項
의規定에依한十二年의期間은特許出
願公告日의翌日로부터起算한다

第四十七條 (特許權의讓渡) ①特許
權은이를讓渡할수있다

②特許權이共有인境遇에는共有者는
他共有者의同意없이그特許權을讓渡하

지못한다

第四十八條 (專用實施權制度) ①特
許權者는그特許發明에對하여期間
場所및內容의制限을加하여他人에게
專用實施를許與할수있다

②特許權者는專用實施權의設定에있
어特許權者自身도그特許發明을實施
할수있는趣旨의約定을할수있다

③專用實施權者는事業과같이移轉하
는境遇를除外하고는特許權者의承諾
없이그專用實施權을移轉하지못한다

④專用實施權者는特許權者의承諾없
이그專用實施權을質權의目的으로하
거나他人에게專用實施權을設定또는
特許發明의實施를許與하지못한다

⑤專用實施權設定以前에받은實施權
이登錄을하지아니하고第五十五條第
三項의效力이있는때에는登錄이없어
도專用實施權에對하여效力이있다

第四十九條 (效力發生要件) 特許權
의移轉, 拋棄에依한消滅, 處分, 制
限이나特許權을目的으로하는質權의
設定, 移轉, 變更, 消滅또는그處分
의制限은相續其他一般承繼의境遇를
除外하고는登錄이있는그效力이發生
하지아니한다

第五十條 (共有者의實施權) 特許權
이共有인境遇에共有者가契約으로써
特別한約定을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
다른共有者의同意없이特許發明을自
身이實施할수있다

第五十一條 (實施의許與) ①特許權
者는他人에게特許發明實施를許與할
수있다

②特許權이共有인境遇에는共有者는
다른共有者의同意없이他人에게特許
發明의實施를許與하지못한다

第五十二條 (實施許與의審判) ①特
許權者는他人의發明特許 또는登錄實
用新案이나登錄意匠을實施하지아니
하고는自己의特許發明을實施할수없
는境遇에그他人이正當한理由없이實
施를許與하지아니하거나實施許與를
받을수없을때에는審判을請求할수있
다 但特許權發生後三年이經過하지
아니한것은例外로한다

②前項의規定에依하여自己의特許發
明이實施되는境遇에相對方이特許發
明實施가必要하여그實施許與를要求
한境遇에는그相對方이正當한理由없
이實施를許與하지아니하거나相對方
의實施許與를얻을수없는境遇는審判
을請求할수있다

第五十三條 (強制實施에依한補償金
支拂) ①第四十五條 또는前條의規定
에依한實施權者는特許權者, 實用新
案權者나意匠權者에對하여相當한補
償金を支給하여야한다

②前項의實施權者는補償金を支給하
던가 또는支給할수없을때에는供託을

하고서그特許發明이나登錄實用新案
 또는登錄意匠을實施할수있다

第五十四條 (實施權의附隨性) ①第
五十二條의規定에依한實施權은그特
許權에附隨한다

②特許發明實施權으로서前項의實施
權이 아닌것은그實施事業과같이또는
特許權者의承諾이있는境遇에이를移
轉할수있다

第五十五條 (實施權의登錄) ①特許
의實施權을登錄한때에는그登錄日以
後에特許權을取得한者나또는그特許
權을目的으로하여質權을設定한者에
對하여도그效力을 가진다

②第十五條第二項 또는第四十一條乃
至第四十三條의規定에依한實施權은
登錄이없더라도前項의效力을 가진다

③第五十二條의規定에依한實施權은
登錄前에設定한質權者에對하여그效
力이있다

④第四十九條의規定은實施權의移
轉, 變更, 消滅이나處分, 制限 또는實
施權을目的으로하는質權의設定, 移
轉, 變更, 消滅이나處分, 制限에對하
여도이를準用한다

第五十六條 (明細書, 圖面의訂正 및 特
許權의分割) ①特許權者는特許發
明의明細書나圖面에不安한것이있
을때에는다음各號의一에該當하는境
遇에限하여그明細書 또는圖面의訂正

二〇二六一〇九

請求特許에 관한證明、特許證의寫本、書類의謄本이나抄本 또는圖面의調製를請求하거나書類의閱覽、謄寫를必要로하는者は特許局長에게이를申請할수있다 但特許局長이秘密을要하는것이라고認定하는것은이를許可하지아니할수있다

第三十五條 (外國人の能力) 外國人으로서國內에住所나營業所가없는者는特許에關한權利를享有할수없다 但條約、協定 또는法律에依하여우리國民에게自國內의住所 또는營業所의有無의不拘하고權利를許容하는國家의國民에對하여는例外로한다

第三十六條 (條約의優先) 特許에關한條約 또는이에準하는것에別段의規定이 있을때에는그規定에따른다

第三十七條 (發明獎勵補助金) 商工部長官은閣令의定하는바에依하여發明獎勵를爲한補助金을交付할수있다

第二章 特許權

第三十八條 (特許權의發生) 特許權은登錄에依하여發生한다

第三十九條 (特許權의內容) ①特許權者는物件의特許發明에依하여서는그物件을製作、使用、販賣 또는擴布한權利를獨占하고方法의特許發明에依하여서는그方法을使用하거나 그方法에依하여製作된物件을使用、販賣 또는擴布하는權利를獨占한다

②新規한同一物은同一한方法에依하여製作된것으로推定한다

③特許發明이그出願한날以前에出願된登錄實用新案 또는登錄意匠을利用하거나抵觸되는境遇에는特許權者는實用新案者 또는意匠權者의實施許諾없이그特許發明을實施하지 못한다

第四十條 (特許權의限界) 特許權의效力은다음各號의一에該當하는것에비치지아니한다

- 一、研究 또는試驗을하기爲한特許發明의實施
- 二、國內을通過함에不過한運轉具 또는그裝置
- 三、特許出願當時에國內에있었던物

第四十一條 (先使用者의實施權) 特許出願時에善意로國內에서그發明實施事業을하거나事業設備을가진者는그特許發明에對하여事業의目的인發明範圍內에서實施權을가진다

第四十二條 (無效審判請求登錄前의權利者의實施權) ①特許의無效審判請求의登錄前에善意로다음各號의一에該當하고國內에서그發明實施事業을하거나 또는事業設備을가진者는그特許發明에對하여事業의目的인發明範圍內에서實施權을가진다

一、同一發明에對한二以上の特許中하나가無效로된境遇에登錄을받았

原特許權者

二、無效로된特許에關하여그發明의正當權利者에게特許를許與한境遇에있어登錄을받은原特許權者

三、前二號의境遇에있어서그無效로된特許權에對하여實施權을取得하고그登錄을받은者 但實施權登錄이없더라도第五十五條第二項의效力이있는境遇에는登錄을要하지아니한다

②特許出願한날前이나 이와같은날에出願한實用新案權이特許發明과抵觸되는境遇에그實用新案의實施權을登錄한者는實用新案權의存續期間이滿了된後에라도原實施權의範圍內에서實施權을가진다 但原實施權에對하여登錄이없더라도그效力이있는境遇에는登錄을要하지아니한다

第四十三條 (實用新案權의存續期間滿了後의實施權) ①特許出願한날前의出願 또는 이와같은날의出願에關聯하여그特許權과抵觸되는實用新案權의存續期間滿了後에있어서의原實用新案權者는그特許發明에對하여原權利의範圍內에서實施權을가진다 但原實施權이登錄이없어도그效力이있는境遇에는登錄을要하지아니한다

②特許權者는前項의規定에依한實施權者로부터相當한補償金을받을權利를가진다

第四十四條 (特許權의公用徵收)

①特許發明이國防上 또는公益上必要한 때에는特許權을政府에서制限、收用、取消하거나政府에서特許發明을實施하거나 또는政府以外の者로하여금實施하게할수있다

②特許權이收用되는 때에는그特許發明에關한特許權以外の權利는消滅된다

③第一項의規定에依하여制限、收用、取消 또는實施하는境遇에는政府나政府以外の者는特許權者 또는實施權者에對하여相當한補償金을支給한다

④收用實施 및補償金支給에關하여必要한事項은閣令으로定한다

第四十五條 (不實施의境遇의強制實施 또는特許取消) ①特許權者가特許를받은後에繼續하여三年以上正當한理由없이그發明을國內에서實施하지 아니하는境遇에公益上必要하다고認定된 때에는特許局長은利害關係人の請求에依하여그實施權을他人에許與할수있다

②前項의規定에依하여實施權이許與된後繼續하여三年以上正當한理由없이그實施權者가그發明을國內에서實施하지아니하는境遇에는特許局長은